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26
----------	-----

2024. 11. 26.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4. 김영권의원 대표발의(7명 공동발의)
-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11. 26.)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영권 의원 )

-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정비함으로써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강남구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한시적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발급 수수료를 정비함(안 제6조제4항 삭제 및 별표 제1호아목 개정)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주현 )

###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전국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8년 8월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범 도입<sup>1)</sup>하였고, 2000년 8월 전국 최초로 은행, 지하철역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sup>2)</sup>하였음. 이후 민원행정 선진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의 제증명 발급종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음.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sup>3)</sup>는 ①중요한 민원처리 수단이면서, ②담당사업 부서의 주요사업 성과 및 실적 지표(이용자 발급건수)가 되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무인민원발급창구’란 사람이 응대하는 유인민원발급창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람없이 기계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창구라는 뜻을 내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라고 2006년부터 규정되었음. 즉,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사용되는 전자장비가 무인민원발급기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
  - 2024년 11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6,218대이고, 이 중 0.9%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sup>4)</sup>되고 있음.

1)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1998. 8., <서울 강남구에 무인민원발급 기능 기기 전국 최초 도입 시범 운영.

2) KBS, 2000.8., <강남구,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운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10530>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https://www.gangnam.go.kr/contents/minwonissue/1/view.do?mid=ID06\\_041612](https://www.gangnam.go.kr/contents/minwonissue/1/view.do?mid=ID06_041612)

4)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안내.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si doCd=6110000&sigCd=3220000&emdongCd=ALL>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정비함으로써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강남구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영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음.

[붙임 1] 조례 개정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징수 현황 (김영권 의원 제공 자료, 2024. 11. 기준)

[붙임 2] 조례 개정 관련: 각 부서 의견 (민원여권과, 주민자치과)

- 조례안 검토 과정 중 발의자인 △김영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와 △강남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관련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강남구청 일부 부서가 제공한 자료 간 관점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그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었음.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16종 발급 수수료 관련 쟁점사항 >  
(2024년 11월 기준)

[1]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은 한시적 면제 결정이었다. (면제 유효기간 있음)	vs.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은 영구 면제 결정이었다. (면제 유효기간 없음)
[2]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은 모든 항목(16종)에 적용된다.	vs.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은 일부 항목(n종)에 적용된다.
[3]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 홍보하였다.	vs.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 홍보하지 않았다.

- 각 쟁점 분석을 위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 연혁을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문제의 발단: 국내 코로나-19 발생 · 확산

-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처음 보고된 이후 대한민국에도 해외유입을 원인으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 [붙임 3] 2020~2023 국내 코로나19 발생·사망 보고현황

-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4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약 3만 4천명임.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권고 및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에 이르러 국가 보건과 안보의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혼란기를 겪었음.

#### ○ 당시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의 입법 취지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감염병과 관계없이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두었던 것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시 무조건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가능성만 규정함.

#### < 민원문서 발급방식에 관한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당시 현행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4항의 입법 취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비상사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특정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취지로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제6조제4항을 신설하였음.

- 각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민원여권과, 주민자치과, 세무관리과)
  - 2020년 2월 민원여권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보고하였음.
  - 2021년 2월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구민의 제증명서류 발급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점, 민원여권과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통한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주요업무로 보고하였음.
-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행정사무감사 질의<sup>5)</sup>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11.27.)
  - 2020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구청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요청을 하여 추가경정으로 3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당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 상시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의 건이 언급되었으나, 주민자치과에서 제한공개경쟁 입찰로 통합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입찰 공고문 등의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 때 무인민원발급창구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설치 및 관리), 세무관리과(세입 금액 확인)임이 확인되었음.
- 2020~2024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한 연혁 점검의 필요성
  - 앞서 설명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혁 점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해당 조례와 연관된 결정을 도표로 정리함.

**[붙임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부 제증명 수수료 한시적 면제 현황** (코로나19 관련)
- 2020년 11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문서 발급 한시적 면제 결정<sup>6)</sup>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11.27.)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하고자 대면접촉 없이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록, <https://www.gncouncil.go.kr/viewer/minutes.do?uid=7374>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록, <https://www.gncouncil.go.kr/viewer/minutes.do?uid=1344#item4>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관내 55대의 무인민원발급기<sup>7)</sup>에서 출력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자는 의안<sup>8)</sup>이 상정되었고, (1차) 한시적 면제 시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가결되었음.

- 2019년 결산기준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이용건수는 55만 8,768건, 세외수입은 약 1억 4,100만원이었으며, 2021년 한시적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임.
- 실제적 측면에서는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동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당시에 논란이 없었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례에 제6조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입안되었음

**< 2020년 11월 당시 회의록 발언 >**

- 김영권 위원 영원히 무료로 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존속기한을 뒤서 코로나가 지금 범람하고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해서 내년 말까지 무료로 하고 상황을 봐서 다시 원상복귀 되면 다시 유료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생략)
- 기획경제국장 김\*\*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주신 부분대로 코로나19 종식까지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희 혼란 피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붙여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 주민자치과장 아\*\*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하고 또 혹시 코로나가 원상회복이 되면 다시 유료로 하는 그 안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2020년 11월 가결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31] [조례 제1597호]**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0.12.31.>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7)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던 45대에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한 10대 포함, 총 55대.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안번호 제329호.

- 부차적으로는 강남구민에 한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강남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증명을 출력하면 수수료가 무료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추가적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음.

< 2020년 11월 당시 회의록 발언 >

○ 주민자치과장 이\*\*

공공에서의 행정은 우리 구민, 물론 구민 복리증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이 비용이 투입되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하면 유동 인구도 많고 경제활동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 와서 발급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구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통합적으로 봐주신다고 그러면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이 서비스가 타 자치단체에도 파급영향을 줘서 아무래도 다른 데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무료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에 따르면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증명 출력시 수수료 무료 적용을 받는 결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다만, 이 때까지만 해도 입법기관인 강남구의회와 행정기관인 강남구청 양측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비상사태로 인한 피로감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자료를 해석하거나,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및 정책 수정에 관하여 각기 다른 주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됨.
-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실제적 측면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민원문서(16종)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하고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임. 형식적 측면에서 이전의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유효기간을 두는 방식을 달리 규정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기에 안타까움이 남음.
- 만일 이 때 ‘수수료 한시적 면제의 유효기간’을 다음의 예시와 같이 부칙을 두는

방식'으로 하였다면, 별도의 폐지 절차가 없더라도 한시적 면제 특례의 예정된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규정의 효력이 소멸<sup>9)</sup>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수범자인 일반 구민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보임.

< 민원문서 발급방식에 관한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당시 현행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연계)

< 자치법규 입법례 >

[예시]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신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제○○○호]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아목의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그러나 2020년 11월 개정 당시 ①제6조제4항을 신설하였고, ②별표 제1호아목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무료라고 변경하였기에, 이후 수수료 면제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별표에서 금액을 다시 책정하여야 하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 별표를 개정하기 보다는 부칙에 특례 규정을 두는 편이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었을 것으로 보여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됨.

9)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5., <법제기준과 실제>

- 2021년 11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문서 발급 한시적 면제 연장 결정<sup>10)</sup>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299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1.11.29.)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감염 예방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던 면제 시한을 1년 더 연장하자는 의안<sup>11)</sup>이 상정되어 원안가 결되었고, 당시 회의록과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2차) 한시적 면제 시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됨.

< 2021년 11월 당시 회의록 발언 >

- 기획경제국장 장\*\*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연기를 수수료 면제를 해 주기로 한 것을 이제 한시적으로 1년을 정해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 생 략 )
- 이\*\* 위원 또 위드코로나라면 또 연기할 예정이신가요? ( 생 략 )  
계속 1년씩 한시적으로 하는데.  
( 생 략 )
- 기획경제국장 장\*\* 그렇죠. 1년씩으로 우선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 2021년 11월 가결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07.] [조례 제1667호]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2년 5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결정<sup>12)</sup>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2.4.14.)
  - 「지방자치법」 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원안가결되었음.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록, <https://www.gncouncil.go.kr/viewer/minutes.do?uid=1473#item1>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안번호 제521호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록, <https://www.gncouncil.go.kr/viewer/minutes.do?uid=8354#item4>

- 2022년 4월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던 시점이었으나, 2차 한시적 면제 시한 2022년 12월 31일에 아직 다다르지 않아서, 질의·토론 중 면제 시한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다만, 이 때 다음과 같은 부칙이 추가되었음.

< 2021년 11월 가결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5.06.] [조례 제1697호]

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없음>

○ 2023년 1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시한 경과

- 수수료의 면제 시한인 2022년 12월 31일이 지나고, 2023년 1월 1일 시점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제6조제4항과 별표 제1호아목은 2020년 12월에 각종 증명의 수수료가 무료로 기재된 채 남아있었음.
-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2023년 시점에 이미 이르러 다소 늦었더라도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제1호아목 각종 제증명 수수료 금액을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추가 조치(할인금액 기재 또는 면제 기간 연장 등)를 했으면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조치 없이 개정되지 않은 채 2023년이 경과하였

< 2023년 1월 당시 조례 현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5.06.] [조례 제1697호]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변동 없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없음>



(보완) / 규정 삭제 및 별표 개정

[예시]

< 자치법규 입법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제○○○호]

제6조 ④ 삭제 <2023.○.○.>

부칙 <2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추가>

(+ 항목별 할인율, 할인금액 등을 기재하거나, 수수료 면제 유효기간 연장 등 조치)

[별표] 1. 아목

(각 제증명 수수료 금액란에 항목별 “무료” 기재 → 항목별 “숫자” 금액 기재로 복구)

○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

- 실제적으로 수수료는 한시적 면제(2022~2023)라는 사실과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례 개정 전까지’ 라는 문구를 추가한 점, △한시적 면제 결정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보임.
-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진실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 소지를 제공한 점은 안타깝다고 보임.
- 대안에 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 점이 문제로 생각됨. 유효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이 시점에 뒤늦게라도 수수료 면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었고, 수수료 부과 대상 민원문서 종류의 수를 조정하거나, 민원문서 종류별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논의하여 정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었음.

□ 민원발급 현황

(2022.11.01.~2023.10.15./단위:통)

합계	주민등록 등초본	자적도지 건축	보건 복지	가족관계 제적	국세 지방세	교육 제증명	4대 보험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기타
706,979	107,591	28,924	1,497	43,390	22,322	1,812	7,932	394,801	78,716	18,500	3,394

\* 기타 : 차량원부,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여권증명서 등

□ 수입(수수료) 현황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조례 개정전까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2020.12.31 및 2022.1.7. 일부개정)
-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수료 : 법원 귀속

- 그 대안 논의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없었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부작위 소극행정으로 말미암아 △기관 내 보고 체계, △기관 간 소통 및 협력 체계가 문제되었다고 보임.
- 2024년 5월 조례 개정
  - 그 다음해인 2024년 해당 조례 개정 때에도 해당 규정과 별표가 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정비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①부칙의 효력을 두고 해석에 논란이 발생하거나, ②일반 구민이 기존에 향유하던 수수료 면제가 한시적인 조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면 갑작스런 수수료 면제 조치 해제 및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갈 수 있어, ③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남아있게 되었음.
- 2024년 11월 조례 개정
  - 위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의원발의 안건이 상정되었음.
  - 쟁점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하여 수집 및 정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붙임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도별 무인민원발급건수 및 수수료(세외수입)  
(민원여권과, 주민자치과, 세무관리과 3개 부서 협조를 통한 통합제출자료 수집 후 재구성, 2024.11.기준)

## 나. 검토 내용

### ○ 안 별표 제1호아목 1) 주민등록등·초본

-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수수료 금액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9.] [행정안전부령 제488호]

제17조(수수료) ②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교부) 수수료는 1통에 400원이고,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 4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도 있음.

### ○ 안 별표 제1호아목 2) 토지(임야)대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금액 규정은 다음과 같음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8호]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7호]

[별표 12]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가. 방문 발급

1) 토지대장 1필지당 500원

2) 임야대장 1필지당 500원

[별지 제71호 서식]

○ 안 별표 제1호아목 3) 건축물관리대장

- 정식 명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기존건축물공부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표기한 기록이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건축물대장으로 정비된 용어라고 보임. 수수료 금액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⑨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 안 별표 제1호아목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료를 1필지당 800원으로 책정하고 있었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안 별표 제1호아목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필지당 600원으로 책정하고 있었음.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안 별표 제1호아목 6)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주택당 600원으로 책정하고 있었음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안 별표 제1호아목 7)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주택당 600원으로 책정하고 있었음.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안 별표 제1호아목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건당 800원이었음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발급 수수료 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안 별표 제1호아목 9)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되어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4. 8. 19.] [국토교통부령 제1345호]

제11조(등록원부 등본·초본의 작성) ①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300원.

○ 안 별표 제1호아목 10) 건설기계등록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면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5.] [국토교통부령 제1399호]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③ 시·도지사는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등본 또는 초본에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500원.

○ 안 별표 제1호아목 11) 농지원부

- 정식 명칭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는 그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음. 이런 사항을 올해 조례 개정 시점에 확인하지 않고 놓쳤다는 것은 조례 관리가 허술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점임.
- 수수료 금액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농지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규정 >

농지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77호]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 안 별표 제1호아목 12)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 수수료는 통당 500원임.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이고, 인터넷 발급시 무료라고 되어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수료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9.] [대법원규칙 제3140호]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안 별표 제1호아목 13) 성적증명서, 14) 졸업증명서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등)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낼 수도 있지만, 기본 원칙은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임.

**< 국립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 12.] [교육부령 제301호]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안 별표 제1호아목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6)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면제 조례 또는 조문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임. 안 별표 제1호아목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6)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면제 조례 또는 조문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임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교육부령 제323호]  
**제42조(수수료)** ①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면제 조례** [시행 2024. 5. 17.] [조례 제1942호]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당 무료
    -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당 무료

## 다. 종합 의견

- 안 별표 제1호아목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6)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면제 조례 또는 조문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임. 항목별 수수료 금액의 법적 근거 및 범위
  -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 증명 항목별 수수료 금액의 법적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붙임 6] 민원문서 발급사항 42종 중 16종(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가능 항목) 수수료 법적 근거 및 범위**

- 안 별표 제1호아목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6)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면제 조례 또는 조문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임. 법적 기준 및 재정적·행정적 지표가 되는 수수료 징수 기준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법령 조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 창구 발급을 기준으로 하는 수수료 금액이 법령에 근거하여 책정되어 있고,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임.
  - 해당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지만, 면제 인정 사유를 적용할만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를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민원사무 관련 수수료 징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①수수료 징수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실질금액에 대한 비용추계를 할 수 없고, ②수수료에 대한 감액 또는 면제를 제공하더라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없으며, ③앞서 살펴본 규모를 감안하여 수립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해당 사항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④심지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 감

면 혜택을 주민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생활인구 포함)에게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조차 어떤 정책적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체감할 수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적 <기준>**은 반드시 존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삭제하거나 없애는 조치는 원활한 집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고, 심각한 경우 해당 법령 규정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함.
- 수수료 징수 <기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감액 또는 면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이나 행정서비스 현황을 확인하는 일종의 **재정적·행정적 지표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하거나 변형하면 항목 간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그래서 법령에서도 수수료 징수 기준의 경우 기준점이 되는 표준금액을 정하여 두고, 예를 들면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점의 2분의 1로 한다는 등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임.

< 자치입법 의견제시 의견13-0058 >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조례로 감면할 수는 없고, 상위 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따르고 표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라 면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할 수는 없어 보이고 그 사무의 특성과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감면여부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조례에서 별표는 복구하여 징수기준이면서 지표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한 가격을 그대로 적어두고, △감액 또는 면제 항목은 무엇이고, △감액 또는 면제 조치를 적용할 대상이 누구인지, △감면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할지 추가적인 조문 규정을 통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최신 자료는 다음과 같음.

[붙임 7]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관련 국민권익위 의결에 따른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24.1.기준)

○ 안 별표 제1호아목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6)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면제 조례 또는 조문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임. 문제 진단 및 시사점
- 수수료 면제 시한이 지난 후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i)제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ii)책임 소재는 불명확한 상태로, iii)2020년 11월 개정 당시 무인민원발급기 담당자가 아니었던 현재의 업무 담당자들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개별 상황을 이해해줄 여지가 매우 적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향유하던 수수료 무료 조치를 일종의 혜택으로 보고 i)수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식하든지, ii)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든지, 어느 쪽이든 강남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2024년 11월 조례 개정 관련 점검 결과, 세외손실 규모의 문제보다는 △행정상 원칙 미준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진실성 미확보, △업무 책임 및 미이행 문제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없음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임.
- 강남구의 각 관리책임부서가 서로의 역할을 다하며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행정적 책임과 협조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안 별표 제1호아목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6)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면제 조례 또는 조문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임. 단기 방안에 대한 고민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서류 발급에 한정하더라도 선택지가 다음과 같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책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점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모든 종류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창구와 같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모든 종류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일부 감액한다.
  - 일부 종류의 민원서류만 선택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일부 감액한다.
  - 일부 종류의 민원서류만 선택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 일부 종류의 민원서류만 한시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 ..)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sup>13)</sup>.
- 권익위 의결 관련 사항 [3]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고, 그 내용을 홍보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입법기관과의 조율 및 관련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항을 포함하여 쟁점 분석의 결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3) 「지방자치법」 제156조, [법률 제19951호], 시행 2024.5.17.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16종 발급 수수료 관련 쟁점 분석 >

(2024년 11월 기준)

[1]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은 한시적 면제 결정이었다. (면제 유효기간 있음)	vs.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은 영구 면제 결정이었다. (면제 유효기간 없음)
[2]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은 모든 항목(16종)에 적용된다.	vs.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은 일부 항목(n종)에 적용된다.
[3]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 홍보하였다.	vs.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 홍보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이미 발급 수수료 금액을 면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 간 조율 및 합의가 필요할 것임.

○ 중장기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1] 인터넷 민원발급 활성화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전기세, 인쇄용 잉크 카트리지 교체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측면도 존재함.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에서는 매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sup>14)</sup>를 선정하는데,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내 손안의 정부24>가 2022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 차츰 단계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비상시 출력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그 비중을 줄이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터넷 응용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14)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2/minwonBest/screen.do>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새롭게 찾고, 장기적으로는 정부24 인터넷 출력을 잘 활용하도록 방향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2] 재검토기한 규정을 둘 필요성

-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두고,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하여 ①현행화 또는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된 점, ②이 조례와 관련한 업무에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어 협업체계 없이는 통합·총괄 부서가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③앞으로도 이 조례는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기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고시와 기상청고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검토기한 규정 예시 1: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련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검토기한 규정 예시 2: 수수료 관련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위의 고시를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도 재검토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최소한 3년마다 각 항목의 개념, 명칭, 적용대상, 감면금액 등에 대한 현행화 및 개선사항 점검을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 이에 따른 수정안 검토를 위한 가이드 자료는 다음과 같음.  
[붙임 8] 조례 수정안 가이드 자료

## ※ 관계 법령

**행정기본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6호]

-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9호]

-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

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시행 2023. 12.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5호, 2023. 12. 26., 일부개정]

##### 1.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표]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 자료

[붙임 1] 조례 개정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징수 현황  
(김영권 의원 제공 자료, 2024. 11. 기준)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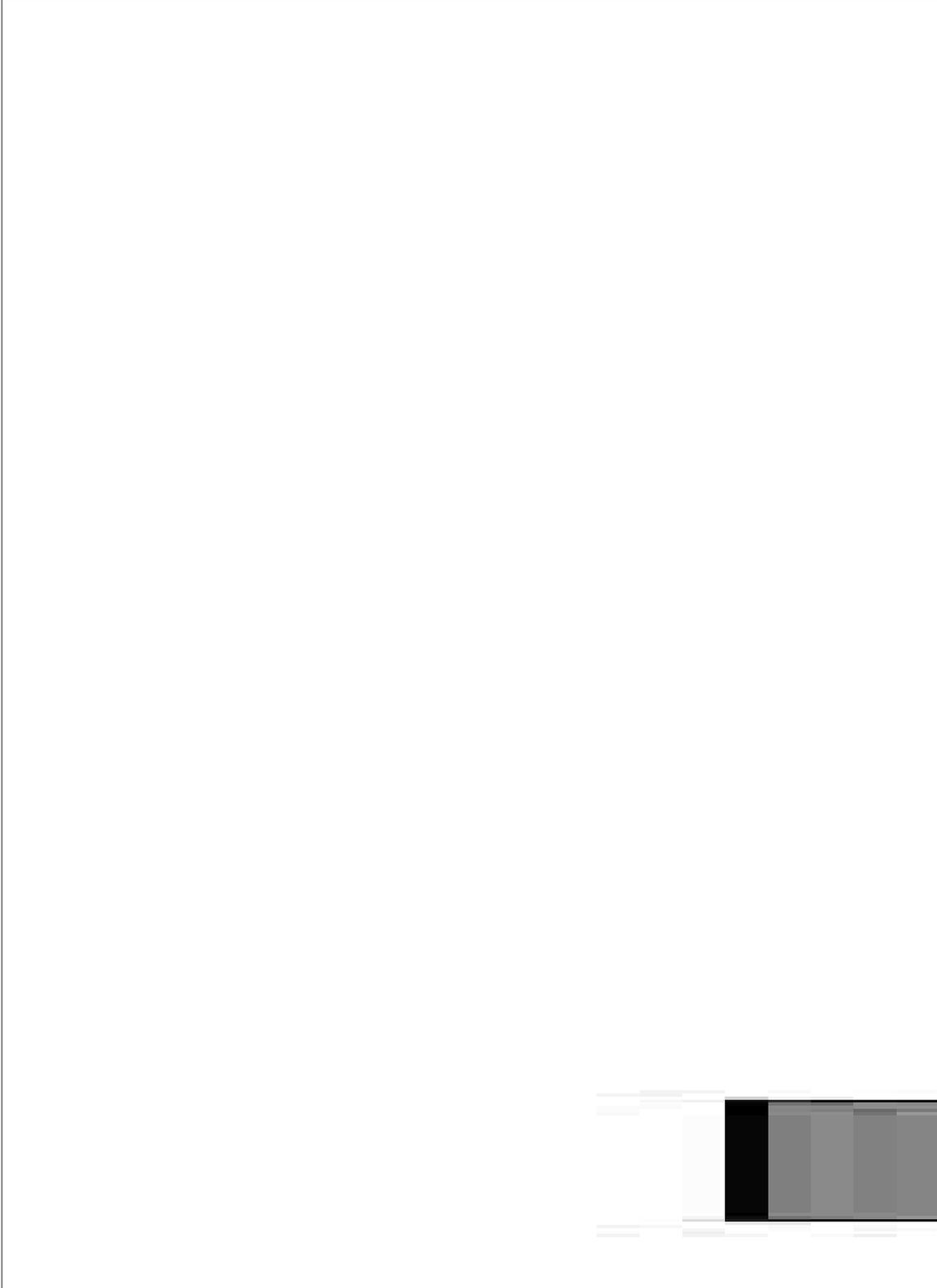
- 종로, 동대문, 중구: 모든 민원 수수료 면제
- 이외 자치구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 서류만 수수료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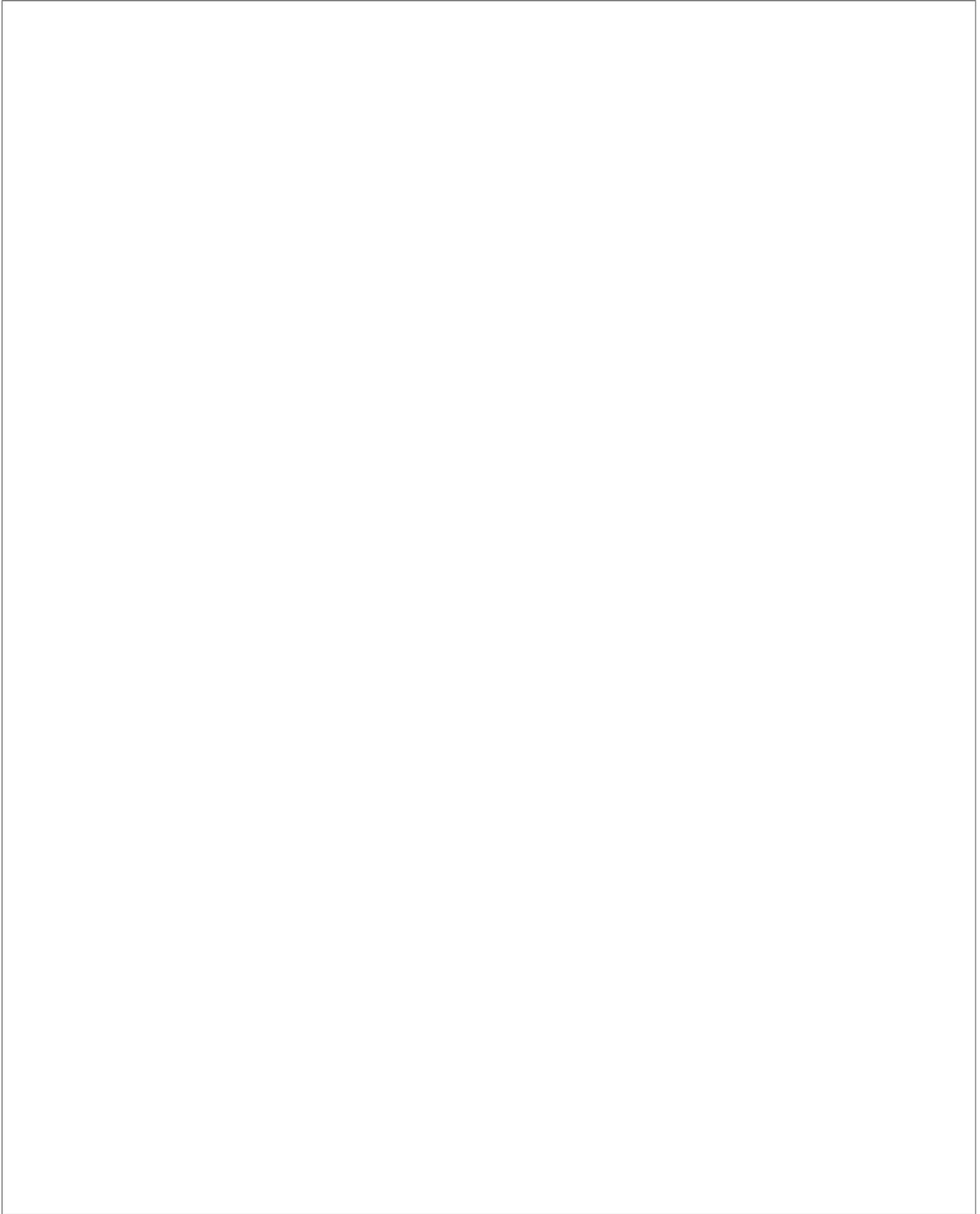
자치구	시행일자	무료 발급 제증명서류	비고
노원구	24.9.26.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동대문구	24.9.26.	모든 민원에 대한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종로구	24.7.1.	모든 민원에 대한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용산구	24.7.5.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동작구	24.5.30.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영등포구	24.3.14.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강북구	23.7.1.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중구	22.11.23.	모든 민원에 대한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성북구	22.1.1.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광진구	21.9.13.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관악구	21.7.8.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강동구	21.5.6.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성동구	17.5.18.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양천구	17.4.20.	주민등록 등·초본(2종)	
서대문구	16.7.13.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도봉구	15.10.8.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금천구	15.2.27.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관계 업무(10종)	

[붙임 2] 조례 개정 관련: 각 부서 의견 (민원여권과, 주민자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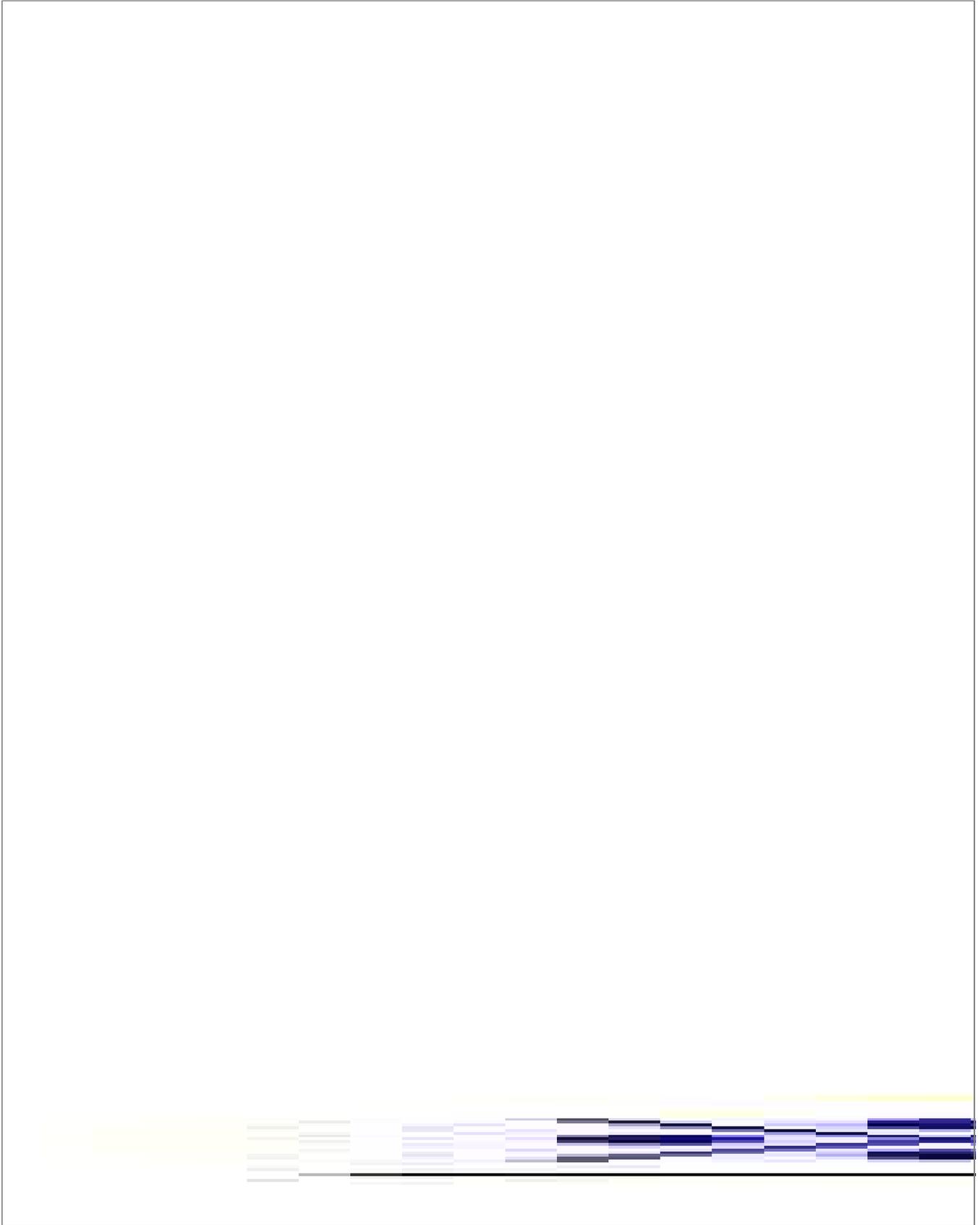
(2024. 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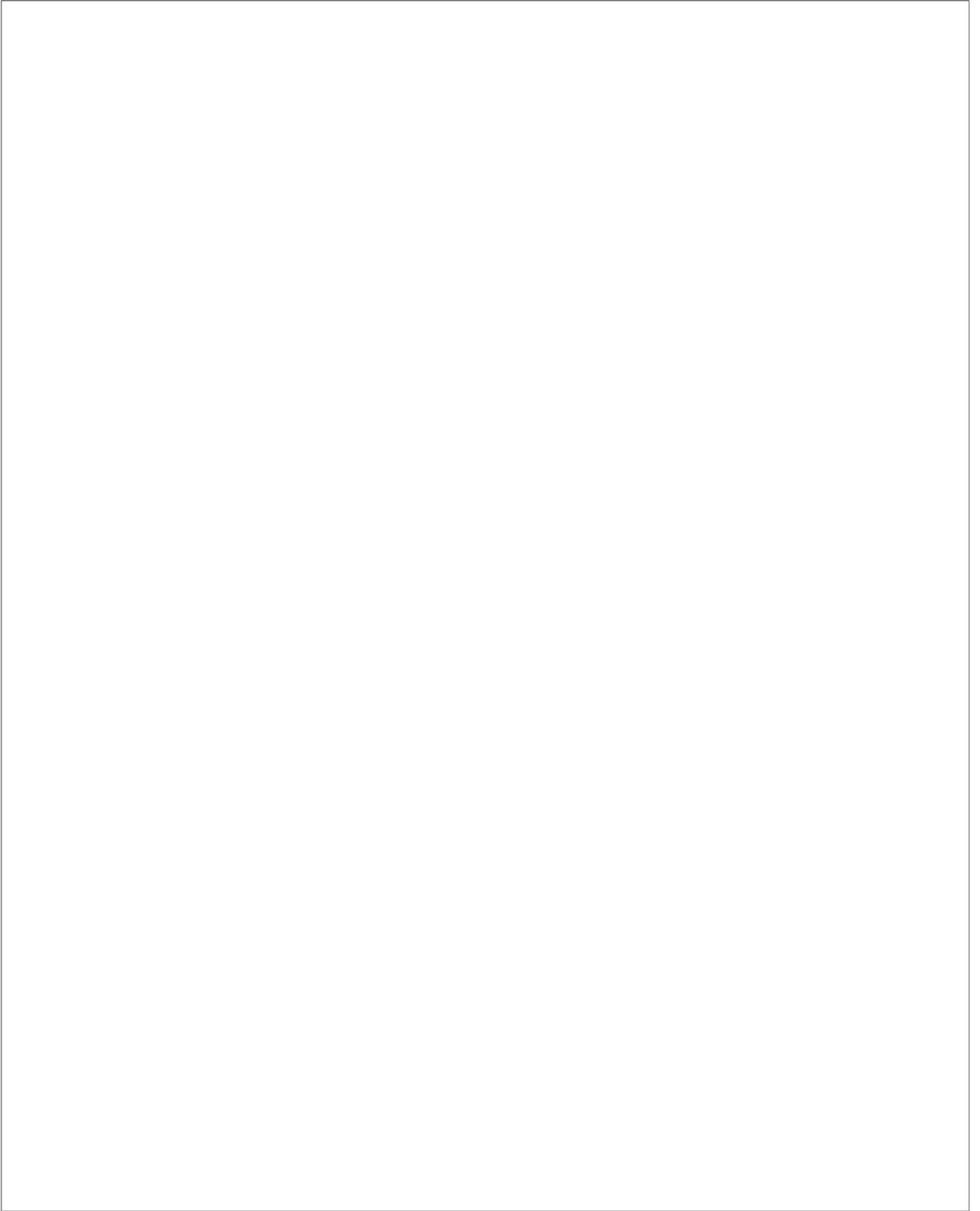
[민원여권과]





[주민자치과]





### [붙임 3] 2020~2023 국내 코로나19 발생·사망 보고현황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변화 양상 >

시 기	발병 현상	대 응
2020.2. ~ 2020.5.	- 집단감염 발생 및 대유행	- 고위험시설 중심 운영 제한 행정명령 - 방역정책 강화
2020.11. ~ 2021.2.	-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 일일 1천명 이상 확진자 발생	- 확진자 모니터링
2021.3. ~ 2021.10.	- 무증상 감염자 증가	- 백신 접종 시작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2021.11. ~ 2022.1.	- 2차 접종 효과 감소 -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	- 기존 방역대응체계 효율성 진단 - 자율적 방역, 중환자 관리치료
2022.2. ~ 2022.3.	- 경증 환자 급증 - 변이 확산에 따른 유행	- 특별방역대책 연장 - 자율 격리 확대, 재택치료 체계 구축
2022.4. ~ 2022.9.	- 과학방역체계 전환 - 신규 확진자 감소세	-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 마스크 착용 자율
2022.10. ~ 2023.2.	- 동절기 유행 가능성 내재	- 백신 추가 접종 독려 - 선제적 검역조치
2023.3. ~ 2023.8.	- 감염병 상황 호전 - 팬데믹 종식 선언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감염병대응현황 보고 재구성.

[붙임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부 제증명 수수료 한시적 면제 현황 (코로나19 관련)

--

- ※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코로나19확진환자 및 사망자 (사망자 집계는 환자발생 신고지역 기준)
- ※ 의안 관련 결정 시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록을 참조하여 재구성.

[붙임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도별 무인민원발급량 및 수수료(세외수입)

(민원여권과, 주민자치과, 세무관리과 3개 부서 협조를 통한 통합제출자료 수집 후 재구성, 2024.11.기준)

■ 한시적 면제 기간 (단위: 건, 원)

회계연도	발급기 수	발급량 (건)	발급량 변동	수수료	연 평균 수수료	비고
2017	41대	548,513건	'17~'20 연평균 544,548건	133,917,500원	연 평균 133,917,500원	
2018	41대	558,175건		131,621,700원	연 평균 132,796,600원	
2019	42대	545,870건		129,856,800원	연 평균 131,798,667원	
2020	52대	525,637건		125,732,200원	연 평균 130,282,050원	
2021	55대	722,838건	'17~'20 연평균 대비 1.3배	(196,308,600원)	연 평균 104,225,640원	(세외수입 손실 추산)
2022	55대	716,126건	'17~'20 연평균 대비 1.3배	(199,696,100원)	연 평균 86,854,700원	(세외수입 손실 추산)
2023년	56대	638,358건	'17~'20 연평균 대비 1.2배	(179,662,500원)	연 평균 74,446,886원	(세외수입 손실 추산)
'23결산서	달성 성과	734,312건				
2024년 (1~10월)	57대	(518,580) (e) 622,296건	'17~'20 연평균 대비 1.2배	(145,523,100원) (e) (174,627,720원)	(코로나19기간 후 지속 면제시) 연 평균 65,141,025원	현재 기준 손실 추산 결산 전 전망치
연 평균	코로나19기간 (2년간) 719,482건		코로나19기간 (2년만) 면제시	(e) - 396,004,700원	(2년치) 2021~2022 면제 규모	(세외수입 손실 추산)
	코로나19이후 (4년간) 674,905건		코로나19이후 (4년간) 면제시	(e) - 750,294,920원	(4년치) 2021~2024 면제 규모	결산 전 전망치 포함
총 (8년간) 609,727건					연 평균 109,427,303원	결산 전 전망치 포함

\*교육, 국세, 건강보험, 연금 증명 서류는 공통 무료.

\*\*2022년 결산 성과분석 자료에는 무인민원발급 이용건수 목표치 초과달성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이라고 기재됨.

[붙임 6] 민원문서 발급사항 42종 중 16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가능 항목)

(강남구 징수 현황과 관계없음)

(현행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 2024. 11. 기준)

연번	항목	주무부서	법령에 따른 발급서류 및 수수료 가격 근거	단위	방문발급 수수료	무인발급 수수료	인터넷발급 수수료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제7호의2, 제9호 서식	1건	400	200	무료
2	토지(임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1필지	500		무료
3	건축물대상 등본(초본)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1,3,5,7호 서식	1건	500		무료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필지	조례로 결정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필지	조례로 결정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5호 서식	1주택	조례로 결정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8호 서식	1주택	조례로 결정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1건	조례로 결정		
9	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건	무료		무료
10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1건	300		무료
11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1건	500		무료
12	농지대장 등본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1건	500		무료
13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28조	1건	1,000	500	무료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28조	1건	1,000	500	무료
	가족관계등록부 제적초본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28조	1건	500	300	무료
14	대학(교) 성적증명서	교육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건	무료		무료
15	대학(교) 졸업증명서	교육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건	무료		무료
16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3호의2부터 제21호 서식	1건	조례로 결정		
17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3호의2부터 제21호 서식	1건	조례로 결정		

\*인터넷 발급 수수료의 경우 정부24 시스템 출력을 말함. / 빈칸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붙임 7]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관련 국민권익위 의결에 따른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24.1.기준)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의결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음.

**정책제안**

장래적으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법」 제28조의 2항의 감면율을 시행령으로 규정(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율에 대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감면 대상’에 따른 수수료 감면 적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해당 시행령의 개정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조치를 2024년 7월까지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

< 국민권익위가 지자체에게 요구한 조치사항 >

- 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인하, 감액, 면제할 것
- ② 수수료 인하 내용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을 홍보할 것

## [붙임 8] 조례 수정안 가이드 자료

### [참조]

< 민원문서 발급방식에 관한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당시 현행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A안]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신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제○○○호]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 ① ~ ③ (생략)

④ **삭제** <20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2호아목의 무인민원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면제한다.**

### [B안] 별표의 수수료 금액 상세화, 재검토기한 신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제○○○호]

제3조(사무 종류 및 **수수료**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기본** 금액은 **별표**의 **방문발급 수수료액**과 같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증명민원을 발급하는 경우 감면 적용하는 금액은 **별표의 무인민원 수수료액과 같다.**  
<개정 2024.○○.○○.>

제7조(재검토기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2종)

(단위/원)

\*국민권익위 자료(2024.1.기준) 참조

법령에 정하여진 수수료 표준금액(가감가능\*)

종류	단위	인터넷발급 수수료액	무인발급 수수료액	방문발급 수수료액	비 고	*국민권익위 자료(2024.1.기준) 참조		법령에 정하여진 수수료 표준금액(가감가능*)								
						전국 229개 자치구 중 다수의 자치구 무인 발급 수수료액	무료	인터넷발급 수수료	무인발급 수수료	방문발급 수수료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무료	800	800			아목 6)에서 확인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무료	무료			(229개 자치구) 무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무료로 규정함.								
나. ~ 사. ( 생 략 )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건	무료	? 200	400		(195개 자치구)	200원 이하	(34개 자치구)	무료	무료	(100~200) 200	400				
2) 토지(임야)대장 등본	1필지	무료	? 400	500		(183개 자치구)	400~600원	(3개 자치구)	무료	무료	(250~500)	500				
3) 건축물대장	1건	무료	? 400	500		(40개 자치구)	200~400원	(3개 자치구)	무료	무료	(250~500)	500				
						(182개 자치구)	400~600원	(3개 자치구)	무료	무료	(250~500)	500				
						(41개 자치구)	200~400원	(권익위 자료에는 초과매수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무료	? 800	800								조례로 결정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무료	? 600	600								조례로 결정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삭제)	1주택	무료	? 600	600								조례로 결정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삭제)	1주택	무료	? 600	600								조례로 결정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무료	? 800	800		(132개 자치구)	600~800원					조례로 결정				
						(68개 자치구)	400~600원					조례로 결정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무료	무료				(229개 자치구) 무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무료로 규정함.							
8)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	무료	? 300	300					무료	(150~300)		3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	무료	? 500	500					무료	(250~500)		500				
									무료	(250~500)		500				
10) 농지대장	1필지	무료	? 500	500		(224개 자치구)	400~600원	(4개 자치구)	무료	무료	(250~500)	500				
11) 어선원부	1건	800	? 800	800												
12) 가족관계등록부	1건	무료	? 500	1,000		(208개 자치구)	400~600원	(20개 자치구)	무료	무료	(250~500) 500		1,000			
												무료	(250~500) 500		1,000	
													무료	(150~300) 300		500
													무료			무료
13) 성적증명서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무료	무료								조례로 결정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무료	무료								조례로 결정				

2. ~ 5. ( 생 략 )

\* 수수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근거하여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11. 26.)

- 질 의 :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증명서 발급을 유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발급 수수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연장 합의. 조례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조치가 전무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 수수료를 바로 잡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발의됨.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의 수수료 면제를 본 수수료 바로 잡는 것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떠한가
- 답 변 : 관련 규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송구하며 발의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감사함. 코로나19로 한시적 면제를 시작한 시점 대비, 현재는 우리구를 포함해 19개 자치구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주민편의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활성화 해야 하며, 무인민원발급을 통한 수수료 무료화가 전국적인 정책 추세이므로 수수료 면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7. 토론 요지

-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를 부칙에 명시하여 수수료 면제는 유지하되 현행 조례 조문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조문을 조정하고, 별표의 증명서 명칭을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26호

발의일자 : 2024. 11. 26.

제 안 자 : 경제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 무료 발급 관련 규정과 별표의 명칭 및 수수료를 입법 체계,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맞도록 수정함

### 2. 수정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 무료 발급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명시함(안 부칙 제2조)
- 별표의 증명서 명칭 및 수수료 등을 현행 법령, 규정에 맞도록 정비함(별표 제1호가목, 아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둔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가목의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 아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단위/원)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대장	1장초과마다	1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건	40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800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9) 자동차등록원부	1건	300	
10) 건설기계등록원부	1건	500	
11) 농지대장	1건	500	
12) 어선원부	1건	800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500	
- 제적등본	1건	500	
- 제적초본	1건	300	
13)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4) 졸업증명서	1건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생략)</p> <p>④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p> <p>부칙</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부칙</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아목의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 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관련)</p> <p>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2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5%;">수수료액</th> <th style="width: 4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1) 지방세 납세증명</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td> <td>1건</td> <td>800</td> <td></td> </tr> <tr> <td>나. ~ 사. (생략)</td> <td></td> <td></td> <td></td> </tr> <tr> <td>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1) 주민등록등·초본</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2) 토지(임야)대장</td> <td>1필지</td> <td>무료</td> <td></td> </tr> <tr> <td>3) 건축물관리대장</td> <td>1장&lt;과마다</td> <td>무료</td> <td></td> </tr> <tr> <td></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4)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1필지</td> <td>무료</td> <td></td> </tr> <tr> <td>5) 개별공시지가확인서</td> <td>1필지</td> <td>무료</td> <td></td> </tr> <tr> <td>6) 개별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무료</td> <td></td> </tr> <tr> <td>7) 공동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무료</td> <td></td> </tr> <tr> <td>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9)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발급</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td> <td></td> <td></td> <td></td> </tr> <tr> <td>- 등본(갑,을부)</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 초본(갑부)</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11) 농지원부</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lt;신설&gt;</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1건	무료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		나. ~ 사. (생략)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무료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무료		3) 건축물관리대장	1장<과마다	무료			1건	무료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무료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무료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무료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발급	1건	무료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무료		- 초본(갑부)	1건	무료		11) 농지원부	1건	무료		<신설>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관련)</p> <p>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2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5%;">수수료액</th> <th style="width: 4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 사.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1) 주민등록등·초본</td> <td>1건</td> <td>200</td> <td></td> </tr> <tr> <td>2) 토지(임야)대장</td> <td>1필지</td> <td>400</td> <td></td> </tr> <tr> <td>3) 건축물관리대장</td> <td>1장&lt;과마다</td> <td>100</td> <td></td> </tr> <tr> <td></td> <td>1건</td> <td>400</td> <td></td> </tr> <tr> <td>4)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1필지</td> <td>800</td> <td></td> </tr> <tr> <td>5) 개별공시지가확인서</td> <td>1필지</td> <td>600</td> <td></td> </tr> <tr> <td>6) 개별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600</td> <td></td> </tr> <tr> <td>7) 공동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600</td> <td></td> </tr> <tr> <td>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td> <td>1건</td> <td>800</td> <td></td> </tr> <tr> <td>9)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발급</td> <td>1건</td> <td>300</td> <td></td> </tr> <tr> <td>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td> <td></td> <td></td> <td></td> </tr> <tr> <td>- 등본(갑,을부)</td> <td>1건</td> <td>500</td> <td></td> </tr> <tr> <td>- 초본(갑부)</td> <td>1건</td> <td>500</td> <td></td> </tr> <tr> <td>11) 농지대장</td> <td>1건</td> <td>500</td> <td></td> </tr> <tr> <td>&lt;신설&gt;</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현행과 같음)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관리대장	1장<과마다	100			1건	4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8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800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발급	1건	300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500		- 초본(갑부)	1건	500		11) 농지대장	1건	500		<신설>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관련)</p> <p>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5%;">수수료액</th> <th style="width: 4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1) 지방세 납세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td> <td>1건</td> <td>800</td> <td></td> </tr> <tr> <td>나. ~ 사.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1) 주민등록표 등·초본</td> <td>1건</td> <td>200</td> <td></td> </tr> <tr> <td>2) 토지(임야)대장</td> <td>1필지</td> <td>400</td> <td></td> </tr> <tr> <td>3) 건축물대장</td> <td>1장&lt;과마다</td> <td>100</td> <td></td> </tr> <tr> <td></td> <td>1건</td> <td>400</td> <td></td> </tr> <tr> <td>4)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1필지</td> <td>800</td> <td></td> </tr> <tr> <td>5) 개별공시지가확인서</td> <td>1필지</td> <td>600</td> <td></td> </tr> <tr> <td>&lt;삭제&gt;</td> <td></td> <td></td> <td></td> </tr> <tr> <td>&lt;삭제&gt;</td> <td></td> <td></td> <td></td> </tr> <tr> <td>6) 지방세 납세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td> <td>1건</td> <td>800</td> <td></td> </tr> <tr> <td>8) 자동차등록원부</td> <td>1건</td> <td>300</td> <td></td> </tr> <tr> <td>9) 건설기계등록원부</td> <td>1건</td> <td>500</td> <td></td> </tr> <tr> <td>10) 농지대장</td> <td>1건</td> <td>500</td> <td></td> </tr> <tr> <td>11) 어선원부</td> <td>1건</td> <td>800</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대장	1장<과마다	100			1건	4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8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		<삭제>				<삭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8) 자동차등록원부	1건	3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1건	500		10) 농지대장	1건	500		11) 어선원부	1건	800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1건	무료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																																																																																																																																																																																																																																																
나. ~ 사. (생략)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무료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무료																																																																																																																																																																																																																																																
3) 건축물관리대장	1장<과마다	무료																																																																																																																																																																																																																																																
	1건	무료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무료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무료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무료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발급	1건	무료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무료																																																																																																																																																																																																																																																
- 초본(갑부)	1건	무료																																																																																																																																																																																																																																																
11) 농지원부	1건	무료																																																																																																																																																																																																																																																
<신설>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현행과 같음)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관리대장	1장<과마다	100																																																																																																																																																																																																																																																
	1건	4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8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800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발급	1건	300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500																																																																																																																																																																																																																																																
- 초본(갑부)	1건	500																																																																																																																																																																																																																																																
11) 농지대장	1건	500																																																																																																																																																																																																																																																
<신설>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대장	1장<과마다	100																																																																																																																																																																																																																																																
	1건	4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8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																																																																																																																																																																																																																																																
<삭제>																																																																																																																																																																																																																																																		
<삭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8) 자동차등록원부	1건	3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1건	500																																																																																																																																																																																																																																																
10) 농지대장	1건	500																																																																																																																																																																																																																																																
11) 어선원부	1건	800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u>무료</u>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u>500</u>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u>500</u>
- 제적등본	1건	<u>무료</u>	- 제적등본	1건	<u>500</u>	- 제적등본	1건	<u>500</u>
- 제적초본	1건	<u>무료</u>	- 제적초본	1건	<u>300</u>	- 제적초본	1건	<u>300</u>
13) 성적증명서		무료	13) 성적증명서		무료	13) 성적증명서	<u>1건</u>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u>1건</u>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 아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아목의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단위/원)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대장	1장초과마다	1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건	4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9) 자동차등록원부	1건	300	
10) 건설기계등록원부	1건	500	
11) 농지대장	1건	500	
12) 어선원부	1건	800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500	
- 제적등본	1건	500	
- 제적초본	1건	300	
13)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4) 졸업증명서	1건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생략)</p> <p>④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 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 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 료를 면제한다.</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 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관련)</p> <p>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2종)</p>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관련)</p> <p>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1) 지방세 납세증명</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td> <td>1건</td> <td>800</td> <td></td> </tr> <tr> <td>나. ~ 사. (생략)</td> <td></td> <td></td> <td></td> </tr> <tr> <td>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1) 주민등록등·초본</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2) 토지(임야)대장</td> <td>1필지</td> <td>무료</td> <td></td> </tr> <tr> <td>3) 건축물관리대장</td> <td>1장<sup>이하</sup></td> <td>무료</td> <td></td> </tr> <tr> <td>4)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1필지</td> <td>무료</td> <td></td> </tr> <tr> <td>5) 개별공시지가확인서</td> <td>1필지</td> <td>무료</td> <td></td> </tr> <tr> <td>6) 개별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무료</td> <td></td> </tr> <tr> <td>7) 공동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무료</td> <td></td> </tr> <tr> <td>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10) 건설기계등록원부 교부신청</td> <td></td> <td></td> <td></td> </tr> <tr> <td>- 등본(갑,을부)</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 초본(갑부)</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11) 농지원부</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lt; 신 설 &gt;</td> <td></td> <td></td> <td></td> </tr> <tr> <td>12) 가족관계등록부</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td> <td></td> <td></td> <td></td> </tr> <tr> <td>- 제적등본</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 제적초본</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13) 성적증명서</td> <td></td> <td>무료</td> <td></td> </tr> <tr> <td>14) 졸업증명서</td> <td></td> <td>무료</td> <td></td> </tr> <tr> <td>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1건	무료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		나. ~ 사. (생략)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무료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무료		3) 건축물관리대장	1장 <sup>이하</sup>	무료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무료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무료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무료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무료		10) 건설기계등록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무료		- 초본(갑부)	1건	무료		11) 농지원부	1건	무료		< 신 설 >				12) 가족관계등록부	1건	무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무료		- 제적초본	1건	무료		13) 성적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1) 지방세 납세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td> <td>1건</td> <td>800</td> <td></td> </tr> <tr> <td>나. ~ 사.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1) 주민등록표 등·초본</td> <td>1건</td> <td>200</td> <td></td> </tr> <tr> <td>2) 토지(임야)대장</td> <td>1필지</td> <td>400</td> <td></td> </tr> <tr> <td>3) 건축물대장</td> <td>1장<sup>이하</sup></td> <td>100</td> <td></td> </tr> <tr> <td>4)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1필지</td> <td>400</td> <td></td> </tr> <tr> <td>5) 개별공시지가확인서</td> <td>1필지</td> <td>800</td> <td></td> </tr> <tr> <td>&lt; 삭 제 &gt;</td> <td></td> <td></td> <td></td> </tr> <tr> <td>&lt; 삭 제 &gt;</td> <td></td> <td></td> <td></td> </tr> <tr> <td>6) 지방세 납세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td> <td>1건</td> <td>800</td> <td></td> </tr> <tr> <td>8) 자동차등록원부</td> <td>1건</td> <td>300</td> <td></td> </tr> <tr> <td>9) 건설기계등록원부</td> <td>1건</td> <td>500</td> <td></td> </tr> <tr> <td>10) 농지대장</td> <td>1건</td> <td>500</td> <td></td> </tr> <tr> <td>11) 어선원부</td> <td>1건</td> <td>800</td> <td></td> </tr> <tr> <td>12) 가족관계등록부</td> <td></td> <td></td> <td></td> </tr> <tr> <td>-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td> <td></td> <td></td> <td></td> </tr> <tr> <td>- 제적등본</td> <td>1건</td> <td>500</td> <td></td> </tr> <tr> <td>- 제적초본</td> <td>1건</td> <td>300</td> <td></td> </tr> <tr> <td>13) 성적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14) 졸업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r> <td>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td> <td>1건</td> <td>무료</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대장	1장 <sup>이하</sup>	1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4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 삭 제 >				< 삭 제 >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8) 자동차등록원부	1건	3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1건	500		10) 농지대장	1건	500		11) 어선원부	1건	800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		- 제적초본	1건	300		13)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4) 졸업증명서	1건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1건	무료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																																																																																																																																																																																																																											
나. ~ 사. (생략)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무료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무료																																																																																																																																																																																																																											
3) 건축물관리대장	1장 <sup>이하</sup>	무료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무료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무료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무료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무료																																																																																																																																																																																																																											
10) 건설기계등록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무료																																																																																																																																																																																																																											
- 초본(갑부)	1건	무료																																																																																																																																																																																																																											
11) 농지원부	1건	무료																																																																																																																																																																																																																											
< 신 설 >																																																																																																																																																																																																																													
12) 가족관계등록부	1건	무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무료																																																																																																																																																																																																																											
- 제적초본	1건	무료																																																																																																																																																																																																																											
13) 성적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대장	1장 <sup>이하</sup>	1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4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 삭 제 >																																																																																																																																																																																																																													
< 삭 제 >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무료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																																																																																																																																																																																																																											
8) 자동차등록원부	1건	3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1건	500																																																																																																																																																																																																																											
10) 농지대장	1건	500																																																																																																																																																																																																																											
11) 어선원부	1건	800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																																																																																																																																																																																																																											
- 제적초본	1건	300																																																																																																																																																																																																																											
13)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4) 졸업증명서	1건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6
----------	-----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김영권·안지연·한윤수·

강을석·이동호·이향숙·

김진경 의원(이상 7인)

##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정비함으로써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강남구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한시적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발급 수수료를 정비함(안 제6조제4항 삭제 및 별표 제1호아목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아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2종)

(단위/원)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관리대장	1장초과마다	100	
	1건	4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8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800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300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500	
- 초본(갑부)	1건	500	
11) 농지대장	1건	500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500	
- 제적등본	1건	500	
- 제적초본	1건	300	
13) 성적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p> <p>④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u>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u> <u>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u> <u>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u> <u>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u> <u>료를 면제한다.</u></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관련)</p> <p>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2종)</p>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관련)</p> <p>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2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 </tr> <tr> <td>1) 주민등록등·초본</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2) 토지(임야)대장</td> <td>1필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3) 건축물관리대장</td> <td>1장초과마다 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4)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1필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5) 개별공시지가확인서</td> <td>1필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6) 개별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7) 공동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등본(갑,을부)</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초본(갑부)</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1) 농지원부</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2) 가족관계등록부</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제적등본</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제적초본</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3) 성적증명서</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4) 졸업증명서</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무료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무료		3) 건축물관리대장	1장초과마다 1건	무료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무료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무료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무료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무료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무료		- 초본(갑부)	1건	무료		11) 농지원부	1건	무료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무료		- 제적등본	1건	무료		- 제적초본	1건	무료		13) 성적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 </tr> <tr> <td>1) 주민등록등·초본</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td> </tr> <tr> <td>2) 토지(임야)대장</td> <td>1필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td> </tr> <tr> <td>3) 건축물관리대장</td> <td>1장초과마다 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r> <tr> <td>4)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1필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td> </tr> <tr> <td>5) 개별공시지가확인서</td> <td>1필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td> </tr> <tr> <td>6) 개별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td> </tr> <tr> <td>7) 공동주택가격확인서</td> <td>1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td> </tr> <tr> <td>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td> </tr> <tr> <td>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d></td> </tr> <tr> <td>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등본(갑,을부)</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초본(갑부)</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td> </tr> <tr> <td>11) 농지대장</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td> </tr> <tr> <td>12) 가족관계등록부</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제적등본</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제적초본</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d></td> </tr> <tr> <td>13) 성적증명서</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4) 졸업증명서</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td> <td>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관리대장	1장초과마다 1건	1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4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800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300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500		- 초본(갑부)	1건	500		11) 농지대장	1건	500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500		- 제적등본	1건	500		- 제적초본	1건	300		13) 성적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무료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무료																																																																																																																																																																																							
3) 건축물관리대장	1장초과마다 1건	무료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무료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무료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무료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무료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무료																																																																																																																																																																																							
- 초본(갑부)	1건	무료																																																																																																																																																																																							
11) 농지원부	1건	무료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무료																																																																																																																																																																																							
- 제적등본	1건	무료																																																																																																																																																																																							
- 제적초본	1건	무료																																																																																																																																																																																							
13) 성적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2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3) 건축물관리대장	1장초과마다 1건	1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4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800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300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 등본(갑,을부)	1건	500																																																																																																																																																																																							
- 초본(갑부)	1건	500																																																																																																																																																																																							
11) 농지대장	1건	500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500																																																																																																																																																																																							
- 제적등본	1건	500																																																																																																																																																																																							
- 제적초본	1건	300																																																																																																																																																																																							
13) 성적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